

『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,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 (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8. 27. ~ 9. 3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상하수도 관련 시설, 가스공급 시설 분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